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03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정동영·황정아·이정헌

윤준병 • 윤종군 • 김우영

박홍배 • 황명선 • 노종면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 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 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공정성 및 공공성"을 "공공성"으로 하고, 같은 조전단 중 "공정성과 공공성"을 "공공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정성 및 공공성"을 "공공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10호 중 "공정성·공공성"을 "공공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공정성·공익성"을 "공익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32條(放送의 <u>공정성 및 공공성</u> | 제32조(放送의 <u>공공성</u> 審議) |
| 審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
|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 | |
| 放送의 내용과 그 밖에 電氣通 | |
| 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 | |
| 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u>공정성</u> | <u>공공성</u> |
| <u>과 공공성</u> 을 유지하고 있는지 | |
| 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 | |
| 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 |
|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 |
|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 |
| 고려하여야 한다. | |
| 第33條(審議規程) ①방송통신심의 | 제33조(심의규정) ① |
| 위원회는 放送의 <u>공정성 및 공</u> | <u>공공성</u> |
| <u>공성</u> 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 | |
| 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 | |
| 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 | |
| 하여야 한다. | |
| 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 2 |
|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 |
| 다. | |

- 1. ~ 9. (생 략)
- 10. 報道・論評의 <u>공정성・공공</u> <u>성</u>에 관한 사항
- 11. ~ 15. (생 략)
- 16. 방송광고 내용의 <u>공정성</u>·<u>공익성</u>에 관한 사항
- 17. (생략)
- ③ ~ ⑥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
- 11. ~ 15. (현행과 같음)
- 16. ----<u>공익성</u>---
 - -----
- 17.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